

행 정 자 치 부

징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처리 및 특별회계 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하동군

징 계 대상자 하동군 ○○○○과(전 ○○면사무소)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는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면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 ○○○은 2014.1.6.부터 2015.1.5.까지 하동군 ○○면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 복지회관의 운영 수입금의 처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 등 실무담당이면서 실무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세입·세출예산 편성 없이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직접 집행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인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용료 등 수익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모두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하동군에서는 [표]와 같이 ○○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목욕탕 이용료 등 수입금 총 124,745천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복지운영위원회 식비,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유류비, 시설장비 수선 및 교체비 등으로 부당하게 직접 집행하였다.

[표] ○○면 복지회관 운영경비 수입·지출 현황('16. 10. 25.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지출			
	수입 합계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특별회계 민간경상 보조금	일반회계 민간 위탁금 등	지출 합계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특별회계 민간경상 보조금	일반회계 민간 위탁금 등
총계	362,807	124,745	200,000	40,000	336,561			
2013년	87,841	37,779	50,000	2,000	77,016	25,016	50,000	2,000
2014년	103,479	33,479	50,000	20,000	109,868	39,867	50,000	20,000
2015년	93,681	31,681	50,000	12,000	91,870	29,870	50,000	12,000
2016년	77,806	21,806	50,000	6,000	57,807	미분류	미분류	미분류

1) 2013년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은 전년 이월액(1,958천원)을 포함한 금액임

2) 2014년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등 20,000천원은 민간자본보조임

2.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를 보조금 등으로 편성·집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 두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 등의 사항을 합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인 복지회관을 직영하면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는 자체 자문·심의기구에 불과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보조금 등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하동군에서는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면 복지회관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는 ○○면 자체 심의기구인 복지운영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금 200백만원을 편성·교부하였으며, 행정재산인 복지회관을 관리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에 걸쳐 동 위원회에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등 40백만원을 편성·교부 후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체 수입금을 동일한 보통예금계좌⁶⁰⁾를 통하여 혼용하여 집행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3. 지출증빙서류 없는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51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126조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이 지급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인지

60) '09.1.23.개설(○○) 이후 계속사용, '16.3.17. 추가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류, 집행품의서류, 청구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하여 집행하고 채권자의 영수인 또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 등 그 증빙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게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하동군에서는 2014년 복지회관 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거나 청구서, 영수증 등 일부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총 95건 79,832,970원을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담당 ○○○은 2014. 1. 6.부터 2015. 1. 5까지 근무한 자로서 근무당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지출서류를 관례 법령에 맞게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즉시 편철하지 못하고 보관하여오다 일부의 서류들을 분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일 현재 복지회관 이용료 등 수입금 집행잔액은 세입조치하기 바랍니다.

[주의] 복지회관을 직영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별로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